

# 시정질문(답변)서

## 【총무국】

### □ 질문의원 : 김혜성 의원

○ 인사적체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 ( 답 변 )

○ 인사적체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사적체는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공감함.

하지만 간부공무원의 연령층이 낮아 정년퇴직 등의 인사요인이 없고,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당분간은 인사적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간부공무원(4급, 5급) 정년퇴직예정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6.30	12.31	6.30	12.31	6.30	12.31
인원	17	2	1	4	4	3	3

- 인사적체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격무부서 근무 직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반면 기회주의적이고 일하지 않는 직원은 인사풀제를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질문의원 : 김혜성 의원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제도화 대책은 ?
- 헬스장 수입을 조례상 사용료로 규정하여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의향은 ?

( 답 변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에 대한 제도화 대책에 대하여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2일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 지침을 구, 동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일부 이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지원, 수강료 징수·집행범위,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헬스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규정하여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는
  -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헬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을 사용료로 규정하여 세외수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취지와 타기관의 사례, 법적 문제점 유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대통령 실시 후 통장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장제도 개선방안 및 반장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

### ( 답 변 )

- 대통령 실시 후 통장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 통장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통령 시행으로 통장선거가 월평균 48회에서 33회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장 선출은 동의 업무 부담과 주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통장 임기를 2년 2회 연임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임기 2년, 2회 연임후 퇴임하는 통장에 대한 시장표창과 정기적인 표창을 실시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늘리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반장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 먼저 시정에 열의를 갖으시고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설문조사 결과처럼 반장제도 운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자율적인 반사회 운영 등 나름대로 반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심의 구도심 지역은 반장 활동이 미약하며 그 실효성이 적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대통령 시행으로 동의 관리지역이 늘어난 통장들의 업무 부담과 실질적으로 반장이 활동하는 아파트 단지 등을 고려할 때 반장제도의 전면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도심의 활동이 미약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반장만을 위촉하고 활동이 미진한 반장은 해촉하여 불필요하게 행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전반적인 반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 질문의원 : 유재구 의원

○ 시·구·동,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운동 가능시설을 휴일 및 공휴일에도 개방, 운영할 용의는 ?

### ( 답 변 )

- 시·구청사 운동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 시 본청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농구장은 365일 개방하고 있으며 실내에 있는 본청 탁구장, 소사구청 탁구장, 오정구청 헬스장은 소규모 시설로서 청사보안 문제로 휴일 개방은 어려운 상황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동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 각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휴일 및 공휴일 개방은 주민자치센터 여건에 따라 헬스 등 10개동, 12개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개방되어 운영중에 있음
  - 휴일 및 공휴일 개방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의 보안 및 시설관리,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보완 및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전면개방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운동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 현재 학교 체육시설은 경기도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시설은 각급 학교장이 자체 관리 규정을 제정 개방하고 있음
  -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장이 교육경비지원을 받아 건립한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어떠한 교육경비(급식시설, 학교도서관, 학교녹화사업 등)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있음. 향후에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기획재정국】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시정부”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

( 답 변 )

-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용어의 사용에 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으로 구분하고 행정부를 통칭하여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음
- 지방에서는 의결기관을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라 하고 이에 상응한 행정기관을 법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반면에 학자들이나 시민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시정부라고 호칭하고 있음  
따라서 법상, 실제상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학계에서는 지방정부론, 지방정부기능론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출연 학술연구기관에서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용어로 일반화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의회,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되는 기반위에서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용어가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2007년도 직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한 사례는?

( 답 변 )

- 우리 시는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조직 내 혁신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2005년부터 시정의총체적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총 587건(2005년 177건, 2006년 200건, 2007년 210건)
- 금년에는 별도자료와 같이 21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3월에 과제선정 보고회, 7월에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연말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금년도 추진과제 중 대표적인 혁신사례는
  - 자치행정과의 대통제
  - 정보통신과의 대형폐기물 모바일 서비스
  - 정책기획과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혁신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있음.
- 특히 자치행정과의 대통제는 금년 8월에 있는 2007년도 경기도 혁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책기획과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기초자치단체 표준 모델로 선정되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에 있음.

※ 붙임 : 2007년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 목록(210건)

□ 2007년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210건)

○ 과제현황

연번	과제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b>【총무국】</b>				
1	○ 청내 우편물 배부·수령방법 개선	단 기	총 무 과	중점 과제
2	○ 다면평가 운영방식 개선	단 기	총 무 과	
3	○ 인사풀제 확대 추진	단 기	총 무 과	
4	○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 기	총 무 과	
5	○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단 기	자치행정과	
6	○ 을지연습 전산시스템 구축	단 기	자치행정과	
7	○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등 개선	단 기	자치행정과	
8	○ 시정 기여도를 반영한 사회단체 보조사업 평가	단 기	자치행정과	
9	○ 중앙공원 u-공원화 시범사업 추진	중 기	정보통신과	
10	○ 시장에게 바란다-처리과정 공개시스템 운영	단 기	정보통신과	
11	○ 고객상담 콜센터 상담영역 확대	중장기	시민봉사과	
12	○ 참살이 직장 만들기	단 기	총 무 과	일반 과제
13	○ 국제교류 도시 간 청소년교류 확대	단 기	총 무 과	
14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제 운영	단 기	총 무 과	
15	○ 직접 찾아가는 친절교육	단 기	총 무 과	
16	○ 공적심사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단 기	자치행정과	
17	○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현	단 기	정보통신과	
18	○ 전자책을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	단 기	정보통신과	
19	○ 통합 지휘무선망 구축	단 기	정보통신과	
20	○ 무인민원발급창구 재배치로 활용도 제고	단 기	시민봉사과	
21	○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만족도 평가	단 기	시민봉사과	
<b>【기획재정국】</b>				
22	○ 시책 일몰제 추진	단 기	정책기획과	중점 과제
23	○ 지방세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	단 기	세 정 과	
24	○ 지방세 반송 고지서 직접 송달제 추진	단 기	세 정 과	
25	○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기기」 도입·활용	단 기	세 정 과	
26	○ 관급사업 전자계약 추진	단 기	회 계 과	
27	○ 미개발 상업용지 수익창출 방안 강구	장 기	회 계 과	
28	○ 학습동아리(CoP) 구성·운영	단 기	정책기획과	
29	○ Work - out 기법 도입·운영	단 기	정책기획과	
30	○ ONE - STOP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단 기	정책기획과	
31	○ 체납세 무통장 입금처리 전산화 추진	단 기	세 정 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b>【경제문화국】</b>			
32	○ 지역노사관계 포럼운영 정례화	단 기	지역경제과	중점 과제
33	○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축제 통합 확대 추진	단 기	지역경제과	
34	○ LP가스판매소 집단화 추진	중장기	지역경제과	
35	○ 부천로봇포럼 운영	중장기	기업지원과	
36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내외 위상 제고	중장기	문화예술과	
37	○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연주회 확대	단 기	문화예술과	
38	○ 문화예술행사 평가시스템 구축	중 기	문화예술과	
39	○ 시 직영양묘장 꽃묘 생산비 절감추진	단 기	농산지원과	
40	○ 식물원 꽃 전시회 예산절감	단 기	농산지원과	
41	○ 작은 도서관(공립문고) 운영 개선	단 기	시립도서관	
42	○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단 기	지역경제과	일반 과제
43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단 기	지역경제과	
44	○ 공공사무실 야간 과도조명 없애기	단 기	지역경제과	
45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모바일 서비스	단 기	기업지원과	
46	○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단 기	기업지원과	
47	○ 중소기업 해외 산업재산권(특허) 지원	단 기	기업지원과	
48	○ 둘리거리 활성화 추진	단 기	문화산업과	
49	○ 청소년 애니메이션 체험아카데미 운영	중장기	문화산업과	
50	○ 박물관 통합관람 할인 운영	단 기	문화예술과	
51	○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	단 기	농산지원과	
52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방법 개선	단 기	농산지원과	
53	○ 생산자 단체를 통한 보조지원사업 추진	단 기	농산지원과	
54	○ 관외대출업무 서비스 향상	단 기	시립도서관	
55	○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 재배치	중장기	시립도서관	
	<b>【주민생활지원국】</b>			
56	○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마련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중점 과제
57	○ 노숙인 쉼터 운영체계 개선	단 기	사회복지과	
58	○ 여성취업·창업 기능강화	단 기	가정복지과	
59	○ 노인 개안수술 행정절차 개선	단 기	가정복지과	
60	○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개발	단 기	체육청소년과	
61	○ 종합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중장기	체육청소년과	
62	○ 위생업소 단속실명제 이행	단 기	위 생 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63	○ 가족봉사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과제
64	○ 장애인 민원불편 도우미제 운영	단 기	사회복지과	
65	○ 부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자체평가	단 기	가정복지과	
66	○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	단 기	가정복지과	
67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단 기	가정복지과	
68	○ 체육시설 정보이용시스템 구축	단 기	체육청소년과	
69	○ 생활체육 보조단체 평가시스템 도입	단 기	체육청소년과	
70	○ 프로여자 농구단 서포터즈 구성	단 기	체육청소년과	
	<b>【환경수도국】</b>			중점 과제
71	○ 환경단속 행정시스템 개선	단 기	환경보전과	
72	○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설치	장 기	청 소 과	
73	○ 계량기 교체업무 민간위탁 추진	단 기	수도시설과	
74	○ 맛있는 수도물기준(Guideline)설정 운영	단 기	정 수 과	
75	○ 잉여가스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단 기	하 수 과	
76	○ 환경인·허가 민원 알리미 서비스 제공	단 기	환경보전과	일반 과제
77	○ 환경전광판을 이용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단 기	환경보전과	
78	○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시스템 개선	단 기	청 소 과	
79	○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단 기	청 소 과	
80	○ 급수상황(당직)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설치	단 기	수도행정과	
81	○ 상수도사용량 과다 수용가 사전안내	단 기	수도행정과	
82	○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수도 체제 구축	단 기	수도시설과	
83	○ 누수수리 업무 민간위탁 추진	단 기	수도시설과	
84	○ 수도계량기 보호통 개선 시범사업 추진	단 기	수도시설과	
85	○ 민원업무 공유서버 구축	단 기	수도시설과	
86	○ 응집기 속도제어 시스템 개선	단 기	정 수 과	
87	○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관리 방법 개선	단 기	정 수 과	
88	○ 새로운 수질분석시스템 도입	단 기	정 수 과	
89	○ 자금의 전략적 분산예치(포트폴리오) 계획	단 기	하 수 과	
90	○ 하수도 맨홀 디자인 개선	단 기	하 수 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b>【도시국】</b>			
91	○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거복합비율 완화	단 기	도시계획과	중점 과제
92	○ 문화가 있는 거리 도시기반 조성	단 기	도시계획과	
93	○ 뉴타운사업 주민홍보 방법 개선	단 기	도시개발과	
94	○ 기계식주차장 문제점 개선대책 시행	중장기	건축과	
95	○ 건축물 외관 및 입면개선 사전심사제 운영	중장기	건축과	
96	○ 공공건축물 건설노하우 사례집 발간	단 기	시설공사과	
97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절차의 획기적 개선	단 기	도시계획과	일반 과제
98	○ 체비지 매각방법 개선	단 기	도시개발과	
99	○ 도시녹화를 위한 양묘사업 추진	중장기	녹지공원과	
100	○ 효율적인 공원관리 운영체계 전환	단 기	녹지공원과	
101	○ 품질향상을 위한시공·관리실태 교체평가	단 기	시설공사과	
	<b>【건설교통국】</b>			
102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중장기	교통행정과	중점 과제
103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법 개선	단 기	교통시설과	
104	○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 추진	중장기	교통시설과	
105	○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단 기	차량관리과	
106	○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확대	단 기	재난안전관리과	
107	○ 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개선	단 기	재난안전관리과	
108	○ 부담금 및 과징·과태료 송달체계 개선	단 기	교통행정과	일반 과제
109	○ 민원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	단 기	교통행정과	
110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단 기	교통시설과	
111	○ 중·상동 지역 자전거투어코스 조성	중장기	도로과	
112	○ 도로관리심의회 내실 있는 운영	단 기	도로과	
113	○ 지정벽보판 관리개선	단 기	도로과	
114	○ 지하공동구 지상 환기구 시설관리 개선	단 기	도로과	
115	○ 역곡역사 편의시설(승강설비) 설치	단 기	도시철도과	
116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시 매각률 제고	단 기	차량관리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117	<b>【보건소】</b> ○ 방문보건사업 확대운영	중장기	보건소 공통	중점 과제
118	○ 공휴일 쿨 민원서비스 실시	단 기	보건소 공통	일반 과제
119	○ 의·약무 민원 신문고 실시	단 기	소사구보건소	
120	○ 방역소독의 유충구제 방식 개선	단 기	오정구보건소	
121	<b>【직속부서】</b> ○ 감리업무 수행능력 점검	단 기	감 사 실	중점 과제
122	○ G2B홍보 네트워크 활용 극대화	단 기	공 보 실	일반 과제
123	○ 『홍보 길라잡이』 On-line게시 활용	단 기	공 보 실	
124	○ 청소년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	중장기	공 보 실	
125	○ 『문화소식포스터』 게시 추가 확대 홍보	단 기	공 보 실	
126	<b>【원미구】</b>			중점 과제
127	○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	단 기	총 무 과	
128	○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	단 기	총 무 과	
129	○ Best부서 Best직원 선정 평가제 운영	단 기	총 무 과	
130	○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단 기	총 무 과	
131	○ 행정전화 네트워크 변경으로 예산절감	단 기	총 무 과	
132	○ 사망 후속처리 알리미 서비스 제공	단 기	시민봉사과	
133	○ 자동차관련 체납액정리 전담반 운영	단 기	세 무 1 과	
134	○ 세수증대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단 기	세 무 1 과	
135	○ 신축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	단 기	세 무 2 과	
136	○ 생산적인 경로당 봉사활동 활성화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37	○ 등기우편물 반송시스템 구축	단 기	경제교통과	
138	○ 전산시스템 구현을 통한 선진 주차단속	단 기	경제교통과	
139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민원처리 개선	단 기	환경위생과	
140	○ 우수지 꽃 울타리 산책로 조성	단 기	건 설 과	
141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확대	단 기	건 축 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142	○ 휴직자에 대한 구정정보 제공	단 기	총 무 과	일반 과제
143	○ 습득 주민등록증 사전예고 알리미 서비스 제공	단 기	시민봉사과	
144	○ 어디서나 민원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제공	단 기	시민봉사과	
145	○ 고객의 소리 사후처리 로드맵 구조화 추진	단 기	시민봉사과	
146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확대운영	단 기	시민봉사과	
147	○ 편리한 호적 서비스 제공	단 기	시민봉사과	
148	○ 지목 변경정리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신청	단 기	시민봉사과	
149	○ 면허세 대장 ONE-STOP 처리	단 기	세 무 1 과	
150	○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개선	단 기	세 무 2 과	
151	○ 비과세·감면 재산 취득자 불이익 최소화	단 기	세 무 2 과	
152	○ 유흥주점 중과세 사전안내	단 기	세 무 2 과	
153	○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지원 SMS 안내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54	○ 복지대상자 조사 업무절차 일부개선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55	○ 보육시설 지원금 e-보육시스템 신청 단일화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56	○ 담배소매인 지정 개선	장 기	경제교통과	
157	○ 재래시장 등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단 기	환경위생과	
158	○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대행	단 기	건 설 과	
159	○ 건축물 건축 시 국기계양대 및 국기꽃이 설치	단 기	건 축 과	
160	○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및 설치확대	단 기	건 축 과	
161	○ 도로점용료 권리의무승계 신고 안내	단 기	도시정비과	
	<b>【소사구】</b>			중점 과제
162	○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단 기	총 무 과	
163	○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단 기	시민봉사과	
164	○ 납세고지서 활용 전자송달 체계 구축	단 기	세 무 과	
165	○ 『인생 2모작』 일터 운영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66	○ 『소사아이 등대지기』 보육시설 정보매체 구축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67	○ 등기우편물관리 프로그램 구축	단 기	경제교통과	
168	○ 어려운 이웃 이사쓰레기 처리 지원	단 기	환경위생과	
169	○ 하수관로 조사체계 개선	단 기	건 설 과	
170	○ 재난상황 MOBILE 서비스 안내실시	중장기	건 설 과	
171	○ 건축 행정 사전 예고제 운영	중장기	건 축 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172	○ 불법광고물 정비 사전 계고제 운영	단 기	총 무 과	일반 과제
173	○ 장제비 신청 원스톱 서비스 실시	단 기	시민봉사과	
174	○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 예약제』 추진	단 기	시민봉사과	
175	○ 체납고지서 발송 시 시정홍보 병행 실시	단 기	세 무 과	
176	○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정착화	단 기	경제교통과	
177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효율적 관리	단 기	환경위생과	
178	○ 위생교육 등 문자 안내서비스(SMS) 제공	단 기	환경위생과	
179	○ 현옻 수거함 정비 사업 추진	단 기	건 설 과	
180	○ 횡단보도구간 보·차도경계 턱 낮추기	단 기	건 설 과	
181	○ 노후·불량건축물 환경정비	단 기	건 축 과	
	<b>【오정구】</b>			중점 과제
182	○ 내부사무 혁신	단 기	총 무 과	
183	○ 洞 지역축제 격년제 추진	단 기	총 무 과	
184	○ 지역특화·전문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단 기	총 무 과	
185	○ 아름답고 생활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단 기	총 무 과	
186	○ 멀티유저 PC 시스템 구축	단 기	총 무 과	
187	○ 오정사랑 만남 갤러리 운영	단 기	시민봉사과	
188	○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단 기	시민봉사과	
189	○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체계 개선	장 기	세 무 과	
190	○ 불우이웃돕기 추진체계 개선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91	○ 보육료 및 운영비 신청서류 간소화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192	○ 어린이공원 지킴이 제도 운영	장 기	경제교통과	
193	○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 부착	단 기	경제교통과	
194	○ 식품·위생민원 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장 기	환경위생과	
195	○ 굴포천제방 친환경 사업	장 기	건 설 과	
196	○ 초등학교 주변 세이프존 지정 운영	단 기	건 설 과	
197	○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개선	단 기	시민봉사과	일반 과제
198	○ 부동산 거래 정보 자료 공유	단 기	시민봉사과	
199	○ 기업체 납세편의 제고	단 기	세 무 과	
200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도우미 사업단 운영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201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단 기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과 제 명	기간별	추진부서	비고
202	○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위탁	단 기	경제교통과	일반 과제
203	○ 식품 위생업소 자율실천 약속 확인제	단 기	환경위생과	
204	○ 청소장비 효율증대	단 기	환경위생과	
205	○ 재활용 관련 민원처리 사후점검제 실시	단 기	환경위생과	
206	○ 도로굴착 공사 인터넷 공개	단 기	건 설 과	
207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감소 추진	단 기	건 축 과	
208	○ 건축물관리카드 발급 서비스 개선	단 기	건 축 과	
209	○ 지식정보시스템 활용	단 기	원 중 2 동	
210	○ 내가 낸 세금 알려드려요! 창구 운영	단 기	고 강 1 동	

##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해밀도서관 신축에 따라 현재 사용시설인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사무실, 경로당 등)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혹시 시에서 매각방침이라면 매각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등 복지시설로 활용할 의향은?

## ( 답 변 )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4-1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진말경로당과 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으로 사용중에 있음  
진말경로당은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및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과에서 2008년 3월 이전까지 모두 이전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해당 건물은 인근 주민 및 인접한 부천대학에서 매각 요청한 바 있으나 이전이 완료된 이후 매각 또는 활용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통보 하였음.
- 향후 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관리토록 할 것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람.

##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액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준공 전 예비합동점검반 운영실시 시기 및 대책은 ?
-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 방지대책은 ?
  - 공사 추진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바 대책은 ?
  - 동절기 영하의 날씨에도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

## ( 답 변 )

- 준공 전 예비합동점검반 운영실시 시기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임.
- 공공건축물은 현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준공 전에 시의원, 사용자, 사업추진부서, 감독부서, 감리자, 지역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예비 준공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확대 검토하여 일정 금액이상 모든 관급공사를 공공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사전 점검을 통해 시공의 부적합사항 보완과 부실공사 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비준공 합동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음.
-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임.
- 부실시공 방지는 공사가 설계서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현장 시공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시행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성실한 시공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못 시공된 것은 재시공토록 엄격히 시정 조치하는 등 감독업무 수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저가 하도급의 발생을 예방하고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비준공 합동점검반 운영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 잦은 설계변경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임.

- 당초 공사 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물량산출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 중 예기치 못했던 민원사항이나 현장 여건변화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동절기 공사 시행에 대한 답변임.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고 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계약기간 이행 등 필요시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시방 기준에 따라 아스콘 포장은 5℃이상,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은 보온양생 등 동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자동차로 인한 체납 현황과 관련하여
  -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
  -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은 ?
  - 징수성과 공무원의 우대는?

### ( 답 변 )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의 증가 사유와 징수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자동차세)의 경우
  - 자동차세 체납액은 2007년 10월 현재 12,377백만원으로
  - 차량대수 증가, 7~10인승 자동차의 승용차 적용세율로 인한 세액 증가가 부과액을 증가시켜 체납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결손 등으로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각종 채권 조기 확보, 「체납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 운영, 대포차량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태료(보험미가입, 검사지연)의 경우
  - 별표1 현황과 같이 2006년과 2007년 과태료 체납액을 비교한 결과 책임보험과태료는 전년도 보다 15.1% 증가한 15,210백만원, 검사지연 과태료는 6% 증가한 9,61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체납액 증가 사유는 경제침체로 인한 무보험차의 증가와 차령초과말소제도시행, 압류 차량의 명의이전 허용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체납액 징수대책은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소유 차량 압류 조치, 분할 납부 및 카드 수납 안내,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특정정밀검사)의 경우

- 자동차에 부과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7년 10월 현재 12,770백만원으로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7,500백만원, 특정정밀검사 과태료가 5,250백만원임.
-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경유차량 증가와 폐차 또는 명의이전 때에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으로 자진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체납액 징수대책은 환경인허가 민원처리 시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등의 각종 점검 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확대 사업 시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고
- 사업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우선 실시 후 향후 개인소유 차량에까지 확대 추진하겠음.

○ 과태료(불법주정차, 사업용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 별표2 현황과 같이 2006년과 2007년 과태료 체납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용자동차는 10%인 22백만원, 불법주정차는 2.6%인 821백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20%인 87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체납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채권 확보를 통한 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징수성과 공무원의 우대는

- 고질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에 공헌한 직원에 대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인 최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됨.
- 또한,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통합체납시스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별표 1>

체납과태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누계			2007년 누계		
	부 과	징 수	체 납	부 과	징 수	체 납
책임보험	14,260	1,054	13,206	16,058	848	15,210
검사지연	9,719	646	9,073	10,034	421	9,613

<별표 2>

체납과태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누계			2007년 누계		
	부 과	징 수	체 납	부 과	징 수	체 납
사업용자동차	561	340	221	442	244	198
불법주정차	38,598	7,655	30,943	44,285	14,163	30,122
버스전용차로위반	775	335	420	810	478	332

## 【경제문화국】

###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나,
- 사전 절차를 이행치 않고 30억원의 준비 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구한 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사업 보류에 대한 시의 의견은?

### ( 답 변 )

- 우리 시는 엑스포를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연관 문화 산업과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도시로서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5월에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에 엑스포를 개최하였거나 준비 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엑스포를 개최코자 준비해 왔음
- 타 ‘지자체’ 방문 시, 행사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에 관해 파악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함
- 내년에 개최코자 하는 엑스포는 촉박한 준비 기간에 따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단 국제행사 규모의 국내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며,
- 행사개최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개최할 국제행사는 완벽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현재, 전문 연구용역기관에서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바, 최종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9년도 엑스포는 제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 또한 2008년도 엑스포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부터 언론매체, 유관기관단체 등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할 것이며,
- 1회성 축제가 아닌 부천시가 무형문화재 명품도시로 주목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부천시에서 위탁한 4개(유럽,교육,수석,활)박물관의 통합운영에 관련하여?

( 답 변 )

- 우리시의 박물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한 축으로 소규모이지만 박물관의 고유기능인 유물 전시와 문화탐방, 체험·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공의 목적 사업에는 일정한 이익의 창출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박물관은 경영적 측면에서 이익의 창출은 적지만, 양질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박물관통합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복합단지 건립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음.
- 아울러, 지난 2006년 125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박물관 입장료 통합운영은 2007년 3월부터 시범시행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 독서통장을 만들자

- 도서관에서 구독한 도서목록을 은행예금통장처럼 만들어 예금액수가 늘어나듯 통장의 책의 권수가 늘어나면 시상실시도 하여
-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1인당 독서량도 전국 으뜸 도시가 되도록 하였으면 함.

## ( 답 변 )

- 우리시는 시민들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동화구연, 독서연구회, 독서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서부터의 독서습관 형성 및 독서의욕 고취에 힘쓰고 있음.
- “어린이 독서통장”제도는 어린이들의 독서이력(독서내용,대출일,반납일등)을 은행식 통장에 기재, 자신의 독서성향 파악 및 독서편식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독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다독자 시상 및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량 증대를 통해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가정 및 학교의 독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통장제도” 도입 운영은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 계기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린이 독서통장”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도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아동주제전문도서관인 꿈빛, 책마루도서관에 도입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책을 많이 읽는 으뜸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음.

## 【주민생활지원국】

###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편가르기 행정 및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지적과 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 답 변 )

- 추모공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면서 시민의 장례복지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임.
- 따라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이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87만 부천시민의 어려운 장례 문제의 해결이라는 최대의 과제를 목살한 채 자신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모든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편가르기, 분열조장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일부 시민의 무조건적인 반대활동에 동조, 편승하여 공익보다는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정치세력들은 장례로 인한 시민의 불편 뿐만 아니라 소모적 논쟁과 그로 인한 국가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추모공원 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특정 사업으로 인한 이해득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이 있게 마련임. 이미 반대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므로 지금이라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노인병원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 ( 답 변 )

-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2004년 10월 김관수 의원님과 3개구 노인회 지회장님 등으로 구성된 여월택지개발지구 노인복지시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9,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을 건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 1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 200병상의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이용인원 2,000명 규모의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한 자리에 건립함으로써 시설간 운영상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1억원, 건축비 215억원, 자산취득비 90억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총 375억이 소요되는 사업임.
-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건교부의 개발지구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등 중앙정부 승인절차를 모두 마쳤고
- 수차례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의원님들과 사회복지 및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설설치및운영조례, 시설위탁동의안의 의회 승인과 2007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그리고 계속비 사업승인 등 의회 승인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거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 주택공사와 부지매입 추진은 물론, 지난 8월에는 수탁자 선정까지 완료되었으며, 10월에는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적격심사가 완료되어 지난 12월 6일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임.
- 예상수요 병상수 산출에 있어서는 검토시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 및 검토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역시 우리 시의 병상수 산출에 있어 윤병국 의원님과 상충되는 부분임.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입원 노인에 대한 간병료의 일부가 지원되므로 일반병원 입원 노인 환자 중 상당수가 노인전문병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병원 병상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검증된 타당성 검토용역과 각종 의회 승인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임을 양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제반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도 지침에 의거 도비 1,479백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금년 8월20일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로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법규에 맞게 운영하라고 의회에서 권고하셨다고 하시는 데 이는 관련조례 제정시 의원님께서 질의와 동시 권고하신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참고할 사항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민감사를 청구하셨는데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과행을 겪고 있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운영 3개월 된 시점에서 업무가 미숙한 문제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검사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재활작업장과 해밀도서관 운영비가 8억과 12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고 하신 것은 매년 그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 초기 비용이 포함되어 다소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건비 등 최소경비 정도만 지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질문의원 : 송원기 의원

- |  |
|--|
| <p>○ 관내 운영중인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용 차량 운행 관련 행정지도 감독여부 실적은 ?</p> |
|--|

### ( 답 변 )

- 우리시 현재 보육시설은 542개소로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관리,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무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542개 시설중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256개소로서 이중 신고차량은 16대이며, 240대는 미신고 차량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음.
-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보험료 등에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 통학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지도 점검시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4건을 신고 또는 관리 전환 시킨 바 있음.
- 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협회에 의뢰하여, 년 1회 정도 시설장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음.
-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학교운동장이 아직도 지역주민(지역행사시 사용이 용이치 않음)에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민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 변 )

- 현재 학교 체육시설은 경기도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은 각급 학교장이 자체 관리 규정을 제정 개방하고 있음.
- 지역주민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개방을 함께 하도록 하여 학교운동장 사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초·중) 및 고등학교에 협조 요청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수도국】

###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부천시 5개소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약 10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이 실제로 생활하며 호흡하는 높이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 기존 대기오염 측정소와는 별도로 도로주요지점에 약 1.5~ 2미터 높이의 거리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은 ?

### ( 답 변 )

- 우리시의 대기오염측정소는 내동, 심곡동, 상1동, 원종1동, 계남공원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상태를 24시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환경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대기오염측정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해 주거지역은 원종동과 상1동, 공업지역은 내동, 상업지역은 심곡동, 교통량에 대한 오염측정은 계남공원에 분산하여 지역별로 측정하며 각 측정소는 측정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
- 주요도로 지점에 여러 개소에 대기오염 거리 측정소의 신규설치는 측정소시설이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환경부의 측정소설치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로 시설되는 사업이며 경기도와 환경부에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사항임  
또한 대기오염 측정시설의 신규 설치에는 1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 구축을 위한 적합한 장소 선정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소요 등의 문제로 현재는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나 향후 측정시설의 추가 설치 여부 등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 【도시국】

###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촉진지구내 재래시장을 존치구역으로 고시할 의향과 재래시장 존치가 불가능 하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 정비사업 기간 중의 안정된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임시개설 시장 설치 계획은?

### ( 답 변 )

- 첫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을 존치할 의향이 없는지와 없다면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미·소사·고강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등이 낙후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저층의 노후한 일반건축물과 도로등을 이용하여 상거래가 활성화 되어있고 노후시설물, 미관, 경관 등 도시환경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 또한 원미·소사·고강지구별 간선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의 상호 연결성과 계획적·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존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래시장을 존치하고 정비사업 구역을 설정시 인근 일부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재개발 할수 없는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어 사유재산 침해등으로 인해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것임
  - 따라서 기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임대상인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토지등 소유자일 경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조합에서 상가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안을 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두 번째 질문하신 정비사업 기간중 임시시장 개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정비사업기간중의 재래시장의 임시개설등은 조합에서 부담할 조성사업비 및 토지확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재래시장 상인등에 대한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해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시 조합과 협의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유재구 의원

- 송내동 449-1번지 송내근린공원 조성 GB관리변경 승인안을 화장장 부지 GB관리 변경안과 분리하여 심의 요구할 용의와 공원조성시 지하 주차장 문화시설 및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

( 답 변 )

- 2006. 5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대상사업 신청시에 부천시립 추모의 집은 공공용시설로 부천송내근린공원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 분리 하여 제출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되어 있는 상태임.
- 송내근린공원 조성예정지 주변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송내동 449-1번지 일원의 43,170㎡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피크닉장, 배드민턴장, 야생 초 화원, 자연학습장등이 들어설 예정임.
- 또한 송내근린공원은 오정대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시에 농업적성도 II등급지에 대한 대체부지로 19,700㎡에 대해서는 송내근린공원에 자연학습장과 수목을 식재하여 환경II 등급지로 조성 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
- 따라서 송내근린공원은 공원시설면적 9,750㎡,건축연면적 100㎡로 설치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최소한의 훼손과 조경시설면적의 제한을 조건 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현재로서는 지하주차장이나 문화 시설 등의 설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 질문의원: 송원기 의원

- 2008년 당초예산에 주택조례에 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계상치 않은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은 ?

(답 변)

- 주택조례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하여는 지난 2008. 8. 9 의원발의로 주택조례 제12조가 부분개정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 세대별 개인사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동전기(엘리베이터 사용, 단지내 가로등, 기계실, 지하주차장, 노인정 및 주민공동시설 등)요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임.
- 부천시 주택조례 제1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3개단지에 지원코자 200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음.

## □ 질문의원 : 송원기 의원

- 관내 공원에 설치된 분수대 현황과 분수대 가동 연간 유지관리비용 및 고장방치로 인한 작동불능 개소와 향후관리대책은?

### ( 답 변 )

- 우리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된 분수대수는 총 56개소로 시 23개소, 구 33개소(원미구 15, 소사구 11, 오정구 7)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 분수대 가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년 유지관리비용은 총 160,000천원으로 재료비 5,000천원, 일반운영비 15,000천원, 공공요금(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14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음. 매년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분수대 노즐, 기계부품교체 등 최소한의 수리보수만 하고 있으며 분수가동도 공공요금 부족으로 장소에 따라 일일 1회에서 4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에 따라 연간 가동 일수와 1일 가동 회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음
- 분수대중 고장으로 인한 작동불능 개소는 총 56개소중 4개소로 시설노후화 및 안전사고 위험성에 따른 주민반대, 기계고장 등으로 분수대 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내년 봄 분수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동불능 분수대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 나머지 52개소 분수대에 대하여는 기계실내 누수여부 및 모터펌프 점검, 분전반 및 계기류, 시설물 작동여부에 대하여 매일 점검, 분수대 가동기간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수대 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부천시(관내) 가로수 수종을 단일식재 또는 구칭별이나 큰 대로변 구분으로 단일수목 식재 계획은 ?

### ( 답 변 )

- 우리시 가로수는 총연장 153km 126개노선 은행나무외13종 32,94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노선별 수종은 73개노선이 단일수종 이며 53개 노선은 2종 이상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종의 식재는 무질서한 느낌을 주고 조화가 되지 않아 지역특성에 알맞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노선별로 식재하고 있음
- 도로연장, 신시가지 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신설도로와 연결된 노선은 시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신선함과 친근감을 주는 선호 수종을 식재하고 있어 기존 도로 가로수와 같은 단일수종 식재는 어려우며
- 속성수이며 꽃가루 비산 및 상가간판 가림 피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버즘 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26개노선 6,052본에 대하여 연차별 수종갱신 계획을 수립, 가로 경관의 특성과 생육환경을 고려 우리시 여건에 맞는 대표적인 단일 수종을 노선별로 식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음

##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쌈지공원이 청소년 유해장소로 변질되고 있으니 시민(주민)모두가 즐겁게 휴식처로 하는 쌈지공원(시설물,보안등,수목관리)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 ( 답 변 )

- 우리시에는 쌈지공원이 원미구 역곡동 365-131번지의 91개소 36,957㎡의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활권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쌈지공원은 1997년 IMF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되었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청결을 위하여 공원별 공원 관리원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경미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는 공원시설물 정비팀을 운영하여 즉시 자체보수하고 있으며,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분기 발주하여 공원시설물 이용의 안전사고예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쌈지공원이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조성되었고 조성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이 부패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속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낡고 노후 된 시설물 및 비효율적인 놀이 공간등을 창의적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지역별 경찰지구대와 자율방범대등 자생단체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김문호 의원

○ 송내역앞 호텔부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

( 답 변 )

- 중동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원미구 상동 413번지상의 호텔부지에 대하여는 2007. 11. 1. 일반숙박시설(호텔)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소방서 등 협의를 거쳐 건축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2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경기도지사 사전승인대상으로 2007. 12. 10. 사전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 건축허가 신청 현황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호텔용지로 지정된 필지로서
- 본 필지는 2007. 8. 2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고, 대지면적 5,517.60㎡, 건축면적 3,534.98㎡, 연면적 74,187.11㎡, 지하5층 지상31층, 주차대수 480대, 객실수 274실의 장기 투숙객 위주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향후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008. 2월중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 국방의료원 건립이 현실성 있는 현재의 선택으로 국방부의 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 ( 답 변 )

-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그간 우리시에서는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공원조성이나 대학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학유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되고,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토방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입장에서 추진하는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국방의료원 건립이 현실성 있는 현재의 선택으로 국방부의 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국방부로부터 국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견 조치가 2007년 8월 9일 요청되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29일 국방부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의견 청취 후 (주민들의) 오해 없이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 2007년 9월에 15일간에 걸쳐 오정구 각동 주관으로 주민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군부대가 이전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찬반양론이 있었음.
  - 2007년 12월 초 기획예산처에서 국방의료원 건립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바 협의해오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 □ 질문의원 : 한윤석 의원

- 주거지역의 미개발토지로 표고 75미터이상의 토지가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와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표고제한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바 체육문화 복지시설로서 학교시설이나 복지시설(노인 복지등)로 이용되는 토지는 조례의 표고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 인지?

### ( 답 변 )

- 주거지역의 미개발토지로 표고 75미터이상의 토지가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 주거지역에 표고 75미터이상의 미개발토지는 심곡본동 성무정 주변과 신동아 맨션, 아남아파트, 소사고 주변에 약 12,014m<sup>2</sup> 정도이며, 참고로 녹지지역 표고 65미터이상의 미개발토지는 성주중학교, 가은병원, 정명고, 롯데맨션, 서울신학대학, 할미산, 현대홈타운 주변에 약 382,527m<sup>2</sup> 정도임.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표고제한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에 대하여
  - 건축허가 여부는 단순히 표고규정 하나만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건축계획서에 따라 해당지역의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인근도로와의 연결되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형질변경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건축법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 할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바 체육문화 복지시설로서 학교시설이나 복지시설(노인 복지등)로 이용되는 토지는 조례의 표고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하여는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와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며,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표고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적합 할 시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호수공원, 시민의 강 활용방안에 대하여

- 호수공원에 큰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과 풍광을 조성할 용의는?
- 시민의 강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청계천과 같은 부천의 수변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할 용의는?

( 답 변 )

- 상동호수공원은 130,180㎡로 우리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원으로 호수 수변과 운동등을 즐길수 있는 공원이며, 시민의 강은 5.5km에 134,705㎡로 서울의 청계천보다도 더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공원녹지시설임.
- 상동호수공원은 대단위면적에 비해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과 기존식재된 수목의 크기가 작고 배수불량 등으로 생장이 어렵고 상록수가 적어 여름철 공원에 그늘이 생기지 않고 동절기에는 황량한 것이 현 상태임.
- 따라서 2007년에 상동호수공원 수목보완식재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본 예산에 1억7천만원을 상정한 바 확보시 배수불량지 정비 및 대형목, 상록수위주의 수목식재로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음.
- 시민의 강과 인접한 수변공원은 현재 자생단체나 회사 등에서 구역별 봉사활동신청시 청소도구 대여 및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부족한 대형수목 및 수생식물 보완을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도비지원을 신청한 상태로 2008년 예산지원시 수목 및 수생식물을 보완식재하여 푸르고 쾌적한 시민의 강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건설교통국】

###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지하철7호선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 지하철공사가 중단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말로써 불안만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투표를 부쳐 결정할 것을 제안
  - 시장이 부임한 이래 지하철공사를 위해 확보한 예산과 중동1116번지의 토지 매각대금 1,800억원중 지하철 대금으로 전입한 금액은?

### ( 답 변 )

-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에 부천시구간 사업비 9천23억원중 부천시가 3천609억원 부담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재정으로는 지하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시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함.
- 지하철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부천시민이면 어느 누구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 중단에 대하여 시민투표까지 가서는 안 되며 우리시에서는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추가 확보와 인천시와 건설협약서 변경(행정구역 거리비율 ⇒ 지하철이용 비율)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차질 없는 지하철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부천시장으로 부임 후 지하철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그간 부천시는 대단위택지개발(중·상동지구, 소사지구, 범박지구)로 세수가 증가하여 한때 전국 도시 중 상위 그룹에 있던 재정자립도가 최근에는 개발 요인이 부족하고 한정된 세수기반으로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지하철 사업에 시비 투입은 현 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임.

- 중동 1116번지 토지 매각대금을 지하철7호선연장 건설사업비에 일부 충당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회계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지하철7호선사업에 지원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지정벽보판 설치와 운영실태에 관하여
  -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과연 돈을 내고 게시하는 벽보판이 효과가 있는지?
  - 벽보판 위의 유리판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하나의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시설물이 되지 않는지?
  - 구시대의 유물인 벽보판이외의 다른 홍보방법이나 대안은 없는지?

### ( 답 변 )

- 지정벽보판 민간위탁사업 추진경위는 2003년 4월 ‘게시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에서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협약사항의 이행을 미루어오다 2006년 9월 협약을 취소하게 되었음
- 수탁업체 재선정을 위하여 2007년 1월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사업을 공고하여 디자인, 재정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위탁협약 체결하였음
- 벽보판 200개소를 수탁업체에서 설치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3년간 상업광고 및 부착 대행료를 징수토록 협약체결 하였고, 1차분 150개소를 교체 중에 있으며 기존 철거한 벽보판은 철거비용 충당으로 갈음하였음.
- 구형 지정벽보판의 이용 상황을 보면 신고건수가 년 평균 28,000여장에 자율적인 탈부착으로 광고수수료 1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실정을 보아 수탁업체가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벽보판 전면유리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전담인력을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 벽보판 이외의 홍보방법이나 대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정벽보판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도 자체운영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벽보판을 철거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으며 향후 타 시군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벽보판을 대신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 질문의원 : 박노설 · 유재구 의원

### ○ 불법전단지에 대한 단속 방안

-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전단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퇴폐업소 전단지에 대하여 사법권과의 공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불법 홍보물(전단)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시행 할 용의는?

## ( 답 변 )

-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상업지역에 월 3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처분 실적은 11월말 기준으로 계고서 발부 3,200건, 과태료 134건에 25백만원, 사법당국에 12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음
- 불법으로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업소명 및 위치 등을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만 기재 되어있는 경우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못하게 되어있어 광고주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관련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불법전단지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
-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퇴폐업소 전단지 등 무차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홍보물의 정비를 위해서 관할경찰서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처벌은 사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엄정한 법적조치를 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현재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보면 공익요원만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거의 없고, 주무부서의 관리 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로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인 행정사무의 방치 사유와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 지양을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방침과 대책은 ?
- 부천시는 ITS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를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교통정보센타와 정보를 공유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 및 답변바람.

### ( 답 변 )

- 현재 우리시에서는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의 예방과 교통안전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과적차량 단속업무 인원은 공무원 3명, 공익요원 17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7대이고, 올해 단속 실적은 검차 1,235건 중 고발 건수가 19건임.
-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김포매립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설기계 차량이 단속회피 목적으로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고, 또한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공사현장 감소로 건설기계 차량이 자연 감소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과적차량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등으로 인하여, 단속율이 저조한 실정임.
- 앞으로 복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과적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켜 주요도로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대형공사장, 민원발생 지역 등, 수시로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차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ITS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고 있으나, 과적차량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단속 방법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질문의원 : 박노설 · 박동학 의원

### □ 지하철7호선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 【박노설 의원】

- 첫 번째 질문은 별내선이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울산~부산 복선 전철사업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부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간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을 도시철도사업에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성과를 밝혀주기 바람.
-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도 별내선 사업과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지정받기 위해 그간에 시장,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 및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세 번째 질문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하고 있음. 이런 불합리한 모순은 2008년도에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과제라고 봄.
  -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타개해나갈 복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받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인천시와 협의 및 공조한 일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 시장께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세워 나갔는지? 그 성과와 앞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각오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마지막 질문은 (사)대한교통학회에서 「도시철도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자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종합결론에 첫째는 7호선 연장사업에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노선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및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박동학 의원】**

- 지하철 7호선 공사금액 부족으로 예정목표 공정률 및 공사기간 모두 못 맞추는 실정인데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국·도비 지원을 노력했으나 성과도 없고, 또한 지원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공사가 중단 되더라도 정상적인 재원이 확보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람.

**( 답 변 )**

- 먼저 박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선과 동해남부선(울산~부산), 경기북부전철사업 진행현황과 부천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광역철도사업 전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선은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2개 시·도가 걸쳐 있고, 표정속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역철도로 지정 받기 위해 2008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광역교통 시설계정으로 반영하는 등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세임.

※ 광역철도사업 절차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예비타당성조사(광역철도 필요성 인정) ⇒ 기본계획수립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노선 지정·고시

- 그리고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사업은 2008년도 예산이 당초 324억원이었으나 190억원이 증액된 514억원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광역철도로 추진 중에 있으나 울산광역시 재정난 이유로 사업비 분담이 어렵자 일반철도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의정부·양주시·포천시에서 경기중·북부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가 출범은 되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의정부시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 그간 부천시 국회의원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외 2명과 기획예산처장관외 2명에게 서한문을 전달하였고, 제269회 국회 예결위에서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에 국비 상향지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3명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국정질의를 하는 등 중앙정부에 적극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07. 10. 12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건교부 차관 면담을 통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조정 연구용역」에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
- 성과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용역에 현재 추진하는 지하철사업은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부천시의 요구사항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과 T/F팀 위원에게 공론화를 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음.

※ 부천시에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과 T/F팀 위원을 개별 방문하여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

-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도 별내선 사업과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2001.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건설교통부)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2007. 12. 4일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대중교통망 추진사업에 대곡~소사선과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내선 등과

같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부천시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 추가 검토 사업으로 경인로와 부천경전철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시철도 사업의 재정부담 문제를 타개해나갈 복안 또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비 부담을 지자체간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시 재정부담이 큼.
  -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철이용자수 비율로 건설비용 부담비율을 재조정하여 건설협약을 변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협약서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실무진에서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8년 초에는 부천시 건설교통국장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과의 면담을 가질 계획이며, 향후 부천시장이 인천시장을 만나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 역할을 다하여 2008년에는 건설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역철도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인천시와 협의 및 공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받는 것에 대하여는 협의 및 공조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광역철도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 나갔는지? 그 성과와 앞으로 시장의 각오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역철도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4명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용역보고서의 대응전략 2가지 해결을 위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첫 번째 도시철도연장사업으로 추진하되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차등지원으로 추진하는 안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하였으며

- 두 번째 표정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급행 열차와 완행열차를 구분하여 광역철도 시설로 지정 추진하는 안에 대하여는
    - 중앙정부의 장·차관 면담 및 국정질의를 통해 추진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음. 그 성과로는 앞에 답변내용과 제17대 대선 후보에게 “지하철 밀어 주겠다” 약속을 받았음.
  - 앞으로도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그리고 시민과 합심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 「도시철도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자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본 용역의 보고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자료의 밑거름에는 상당한 보탬이 됐다고 생각됨.
  - 첫 번째 제안인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서울시(40%)와 광역시(60%)가 차등지원이 되듯이 모든 재정을 고려할 때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 그간 중앙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인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임.
  - 두 번째 제안인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임.
    - 그 이유는 광역철도 지정요건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시속 50km를 유지해야 하나 우리시는 이미 도시철도로 추진중으로 시속 38km로 시공중에 있음.
    - 광역철도로 지정받는 조건으로 지하철 운영을 급행과 완행을 구분하여 운행시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포함되어야 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통과 후 노선에 대하여 지정·고시가 되어야 됨.

- 다음은 박동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재원확보가 다 된 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공사 중단시 현재 6개소 정거장은 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지하매설물(가스,전기,상·하수도등)이 매달기된 상태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또 공기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로 지하철 공사 추진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지하철사업으로 확보된 잔액은 421억원으로 2008년 본예산에 421억원 편성과 제1회 추경에 76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8년도까지는 공사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2009년부터는 시 재정 여건으로 시비투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시에는 공사 중단이 예상됨
-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도비 추가 및 건설협약서 변경(인천시)등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질문의원 : 박동학 의원

- 부천터미널 소풍 개통 후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 버스노선 체계의 종합적 수립계획 및 구도심 지역에서 소풍까지 버스노선 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 ( 답 변 )

- 부천터미널소풍에서 부천시내 및 인근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노선 확충 계획을 2007. 8. 20. 수립 후 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시내버스 2개 노선, 마을버스 1개 노선 및 관외버스 2개 노선(경원여객)을 조정 한 바 있음.
- 현재 부천터미널소풍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시내방향 7개 노선, 서울·김포방향 8개 노선, 시흥·안산방향 2개 노선, 인천시·인천공항방향 3개 노선 및 김포·광명시 방향 2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이 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음.
- 또한 원종동 및 고강동 등 일부 구도심에서 중·상동 및 부천터미널 소풍 방향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당동에서 화곡역을 운행하는 59번 노선을 터미널까지 조정하였으며 향후, 원종동 및 성곡동 등 일부 구도심에서 터미널 방향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유재구 의원

- 불법주정차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 운영차량을 20미터이상 도로만 국한하여 단속 할 용의는 ?

( 답 변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은 단속 대상임
- 주행형 단속 차량은 현대백화점 등 혼잡도가 높은 대형상가 주변과 소향길 등 상가밀집 지역을 1일 3~4회 이상 순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지역은 2회 정도 순회하고 있음.
- 주행형 단속 차량은 현재에도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폭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20m 미만 도로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음.

##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6조4항에 지역별 견인차량은 원미구4대, 소사구1대, 오정구1대로 명시 되어있으며 10월 한 달 동안 견인실적을 보면 민간위탁견인이 수익성만을 위하여 근거리인 원미구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데 민간위탁 계약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소유 공단견인차량 7대가 있으나 공단차량은 할 일이 없어 세워 놓고 민간위탁 견인료로 막대한 6억원을 낭비하는 이유는 ?
- 공단소유 견인차량 7대외에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의 적정성 여부와 공휴일, 일요일까지도 주정차단속과 견인은 민간위탁 견인업체를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되는바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견인용역료에 대하여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와 민간위탁 견인차량의 장소불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대책은?
-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견인보관소 주변 집중단속은 민간위탁 견인업체를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하는바 계속하여 시정 요구해도 시정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 변 )

- 불법주정차 위탁견인이 근거리인 원미구에 편중되었고 견인차량 운영을 계약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 35조 규정에 의거 견인을 하고 있음.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은 2005. 7. 1일 소사구·오정구지역에서 민간위탁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시범운영 분석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영시보다 188% 효율성이 증가하여 2006. 7. 1일부터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음.



- 2007년 10월말기준 민간위탁 견인 실적을 살펴보면 원미구 9,223대, 소사구 1,288대, 오정구 1,177대로 전체 11,688대를 견인하였음.
  -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지역 특성상 역세권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아 견인 역시 많은 것이며,
  - 민간위탁 계약서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조정 운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공단차량이 있음에도 민간위탁으로 견인료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데에 대한 답변임.
-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공단소유 견인차량 7대가 불법주정차차량 5,495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차량 2,085대, 방치차량 384대로 총 7,964대를 견인하였으며, 공단소유 견인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차량 방치차량 처리업무를 우선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10월말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견인한 차량은 11,688대로 이에 따른 교통소통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며, 견인 대행료로 지출한 금액은 291,216천원임.
- 민간위탁 견인차량의 적정성 여부와 공휴일, 일요일 까지 주차단속은 견인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 대한 답변임.
- 민간위탁차량은 차량수에 따라 견인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건수에 따라 지급함으로 위탁업체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차량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음식점 및 대형 쇼핑몰의 유동인구가 많아 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주변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이 필요한 것이며 민간위탁업체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도로상의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단속업무와 견인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과 동시 견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견인료의 근거리·원거리 구분계약과 견인차량의 질서 위반에 대한 답변임.
-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동서간이 7km, 남북간이 10km로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반경 5km 이내임.  
따라서 현행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별표의 견인 요금표 요율의 2.5톤 미만 차량을 기준하면 5km까지 30,000원 매 1km 초과시 1,5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시정 질문시 지적하신대로 향후 1km를 기준으로 매 1km 초과시 마다 일정금액이 증가하는 거리비례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민간위탁견인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2008년부터는 견인차량 기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견인차량 정면에 실명을 부착 운행토록 함으로서 책임감 있는 준법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견인보관소 주변에 대한 집중단속은 민간위탁 견인업체를 위한 단속이라는 데에 대한 답변임.
- 우리시에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견인보관소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으로 유흥업소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단속과 견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견인보관소 주변 단속은 민간위탁 업체를 위한 단속은 아니며 견인보관소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의원 : 주수종 의원

-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일명 볼라드가 재질이나 규격, 모양, 설치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일부는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바, 이를 지역특성에 맞게 규격을 한 두가지로 통일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 답 변 )

- 자동차 진입억제를 위하여 우리 시 주요 도로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주(볼라드)는 총 8,651개소이며, 이중 2004년 12월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 이후, 재질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 볼라드는 584개소 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진입 억제용으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가로환경과 문화도시에 걸맞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대부분 시설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수많은 볼라드를 일시에 교체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규정에 부적합한 볼라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물이 불량하여 정비를 요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신설하는 곳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주수종 의원

- 도당동과 약대동, 신흥동 등이 겹치는 아남반도체 앞 오거리(약대오거리) 기업은행, 약대초교 쪽 지역은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고, 신호체계가 복잡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통행방법과 신호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 아남반도체 앞 약대오거리는 사고다발 및 정체발생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질문의원 : 송원기 의원

- |   |
|---|
| <p>○ 관내 5톤 미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및 차고지 증명 발급<br/>요건 및 구비서류, 위반시 행정처분의 범위?</p> |
|---|

### ( 답 변 )

- 관내 5톤 미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711대이며, 차고지 증명 발급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자가 차고지인 경우에는 단독건물, 나대지, 상가, 빌라와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차고지 사용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대관련 입증서류가 필요함.
  - 외부주차장 이용 시에는 주차장 사용 확인서와 주차장 차고지증명 발급대장이 필요함.
  - 관외차고지인 경우에는 화물터미널 또는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제출함
  
- 차고지 위반시 행정처분의 범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시에는 30일간 사업전부 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게 됨.

## □ 질문의원 : 강일원 의원

- 소사구 계수동 소재 계수대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 도로개설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케 된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도로개설에 따른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전 의견수렴 및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복수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 계수·범박동 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배제된 이유는 ?
  - 도로편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약속하였다면 공개하고, 주변지역의 지가와 형평에 맞는 자산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 변 )

- 계수대로는 시흥~부천~서울을 연결하는 국비지원 광역도로사업으로
  - 낙후된 계수·범박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 공사와 주택재개발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같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00년 재개발대책위원회구성 이래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
  - 향후 계수대로 자연녹지구간 개설지연에 따른 광역도로 연계성 및 기능상실, 국도비 지원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2007. 10월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거쳐 계수대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동법규칙 제53조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이주대책 일환으로 주택(분양, 임대) 희망자를 위하여 범박동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사인천지사와 협의토록 하겠음.

-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및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에 따른 제반사항을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겠음.
- 지구단위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경(학교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중밀도 위주의 주거용지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으로
  - '06. 10월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시 구역면적 304,312㎡ (사업유형:주택재개발)에 용적을 200% 이하, 건폐율:40% 이하로써 기반시설 29.7% 이상(공원 : 39,561㎡, 도로 : 50,909㎡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으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은 '07. 08월 주민 공람공고 및 '07. 11월 주민 최종 공람 공고된 사항으로 당초 공람공고 내용과 최종 공람 공고 내용중 계수대로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계수대로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대부분 기 인가된 도로개설 예정구간으로 네거리 주변의 분절된 자투리 토지로서 일단의 지역내 별도의 진출입 개설 곤란 등 주거용 토지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녹지로 존치한 것임.
- 용도변경 후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에 대하여는
  - 지난 2000. 6. 26일 도로폭 축소조정(50~30m), 계수동 개발과 연계시켜 동시착공, 개발지구 매각가격에 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에 대하여 ① 도로폭원은 30m이나 토사 절,성토로 인하여 노체부폭 40~50m 확보 필요, ② 국비보조사업으로 착공 지연시 보조금 반납 등 사업 시행의 불투명으로 계획에 의한 착공이 불가피함, ③ 보상은 관련법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급 할 것을 회신한 내용은 있으나 도로편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서면 약속한 내용은 없으며,
  - 주변지역의 지가와 형평성 문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음.

##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 맞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을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변경할 의향은?

### ( 답 변 )

- 우리 시의 야간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에 가로등이 14,850등, 보안등이 12,103등이 설치되어 있음.
- 우리시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3년도에 가로등 디자인 공모를 하여, 도로 신설이나 확장사업 구간에 공모작에 선정된 가로등을 설치하여, 문화도시에 걸 맞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신설·확장사업 구간에는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임.
- 기존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시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현재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촉진사업구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특색있게 설치하여 가로환경조성과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초·중·고교의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 ( 답 변 )

- 초·중·고교의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 우리시 관내 초·중·고교는 총 114개교가 있으며, 이중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71개교(62%)이고, 미개방 학교는 43개교임.
  - 미개방 학교측의 의견으로는, 고3 야간수업, 외곽지의 주차장 개방시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학교는 야간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화재, 기물파손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침에 늦은 출차로 인해 등교길 안전사고 등으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학교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측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시설을 주민들께 최대한 확대개방토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 현재 우리시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188개소 4,430면을 운영 중에 있음.
  - 시행 초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반대 및 내집앞 주차구획 삭제 요구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차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문 실시 등 대상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적치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 단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OBS방송국 앞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로 인하여 1.5km의 도로에 6개의 횡단보도, 5개의 신호등으로 상습정체구간을 만든 상황에 대하여
  - 신호등 설치시 경찰서에서는 주민의견이나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견수렴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치비용 부담은 누구인가?
  - OBS방송국 대지안에 2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100m 간격으로 중앙선 절단 및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OBS방송국내 부지를 활용하여 1차선 도로 하나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 ( 답 변 )

-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의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수렴근거는 없으나, 관할경찰서에서 의견수렴토록 협의 하겠으며, 설치비 부담은 부천시에서 하고 있음.
- 2개의 출입구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OBS방송국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상가 및 교회의 주 통행로로써 이미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신규로 설치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은 방송국 정문 앞이며, 이는 신호등 설치의 필요가 인정되어 중부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가결되어 설치하였음.
- OBS방송국 앞 좌회전 1개차로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오정동 202-7번지의 1개 필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여부 등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산업길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지정을 신청을 한 상태임. 향후, 건설교통부의 광역도로 지정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길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테크노 3차 완공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통과 삼정동과 산업로가 연결되어 산업로의 정체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 대해 질문
  - 산업로 통과 버스노선을 만들어 10~2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 이곳은 사거리가 아닌 오거리인데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의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에 대하여 답변
  - 산업로 주변 공장지역이 생긴 후 테크노 1차, 테크노 2차, 테크노 3차, 오정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매번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을텐데 평가 후 신설된 교통대체 도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 ( 답 변 )

- 산업로 통과 버스노선 신설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답변임  
2007년 12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쌍용테크노3차와 신설도로를 경유하여 축산물공판장 방면의 출퇴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 11. 6일 7-4번(송내역~순천향병원~신흥시장~테크노3차~오정동), 8번(대장동~테크노3차~중앙공원~중동역~부천역~원종동), 11번(대장동~테크노3차~신흥시장~오정구청~원미구청~부천역) 3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12월중 운행개시 예정임.
- 산업로 오거리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중1-51호선 신설로 인해 오거리가 형성된 지점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현재 협의 중이나 5지교차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테크노파크 및 산업단지의 도로신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크노파크 1·2차 단지는 중동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사전 도로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테크노파크 3차사업은

사업부지앞 동부간선 폐농수로 부지를 매입하여 중로1-51호선 및 사업부지 후문에서 중동대로를 연결하는 소1-197호선을 개설하여 상오정길 및 중동대로에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오정큰길 및 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 또한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는 남측은 신흥로 주출입구를 통해서 오정큰길(IC)과 입체 접속하고, 북측은 내부 남북간 도로(폭20m)를 통하여 남측의 2개소(신흥대로와 산업로)와 북측 1개소(국도6호선)을 통하여 오정큰길과 접속토록 계획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하였음.
- 물류단지는 향후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확정시 도로계획을 함께 검토할 예정임.

## □ 질문의원 : 한윤석 의원

-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면수 87면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 확대와
- 부천역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병행하여 우선 광장만 조성하고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견해는 ?

## ( 답 변 )

-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은 2005. 6. 27일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2006. 10. 27일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광장 4,477㎡와 지하주차장 87면을 사업비 49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19필지 2,606㎡, 건물 17동을 보상 완료하고 영업권보상 13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으며, 건물철거는 17동 중 2동을 철거하고 잔여 15개동은 200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역광장 하부에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제외한 서측 42면, 동측 45면, 총 87면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음.
- 사업지 좌·우측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항은 부천역 1-1구역과 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선 광장만 조성하고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방안에 대하여, 시 재정여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의 시행시기와 주차면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한윤석 의원

- 성주중학교와 접하고 있는 송내동 416-1번지와 인근 송내동 산18-8, 산18-10번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충할 의향은?

( 답 변 )

- 성주중학교 부근의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중학교 부근의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 주차종합계획 상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 질문의원 : 한윤석 의원

○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조명등 설치에 관하여?

-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소비전력이 많은 네온 등, 메탈할라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2006년 기준 전기료만도 12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것을 LED 등으로 교체 할 경우에 50%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함. 또한 교체사업은 에스코 사업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 답 변 )

- 현재 우리 시의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고압나트륨 등으로 각각 14,850등과, 12,103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도에는 171등의 고효율·고수명 무전극 램프가 설치되어 있음.
- LED 등은 고압나트륨등에 비해 전기요금은 약 6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명은 약 8만 시간으로 나트륨등 1만 2천 시간보다 긴 수명으로 유지보수비용 면에서 월등히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로 나타나 있으나, 나트륨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경우, 약 7배 정도의 교체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고효율 조명기구로 미 인증 되어 있음.
- LED 등은 빛의 확산 각도가 기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차량 운전자들의 시각장애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과, 등기구 비용의 고가로 현재로서는 경제성 효과 등의 확신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미비점이 보완되고 고효율 조명기구로 인증되어 효과가 우수할 시 에스코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
  -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부천시 재정형편상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이해하나 편익사업비 예산의 집행을 늦추거나 보류한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제외한 편익사업비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 답 변 )

-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불편이 있거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음.
- 올해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정비사업 등 44건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 하였으며,
- 2008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조기에 조사 착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음.



## □ 질문의원 : 이영우 의원

- 2004년도 지하공간 개발제도화 방향 및 시설기준에 대한 정책 세미나 (주관:건설교통부, 주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부천시 지하공간 개발계획 타당성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지하도로 및 상가등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 및 지하공간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 개발하는 투자사업 제안등 개발방향 제시함.
  - 부천 송내역 역세권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동서남북으로 단절된 철도 및 도로로 인하여 역사주변에 시민의 지상보행 동선의 구축이 (2중 3중의 교통신호 체계로 도로 도로횡단 등이 지체되고 있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 부천시는 역세권 주변 지하공간 개발 의향은 있는지 여부, 있다면 문제점 및 대책은?
  - 정책 세미나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은 ?

## ( 답 변 )

- 2003. 6. 12. ~ 2004. 07. 05.(13개월)까지 사업비 161백만원을 투입 (재)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천, 송내, 중동, 소사, 역곡역 등 5개소의 역세권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도심공간의 개선을 위한 도시 공공편익의 효과에 있음.
- 부천 송내역 역세권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동서남북으로 단절된 철도 및 도로로 인하여 역사주변에 시민의 지상보행 동선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시민들이 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지하상가 개발제안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사항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정책세미나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은 2004. 12. 29.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한 지하공간 개발 및 계획사례 세미나 당시 우리시가 실시한 부천시 역세권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내용을 세미나 자료로 채택 우리시와 관련 없이 진행된 내용임.